

제주지방법원 2024. 4. 19 선고 2022가단6241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

담당변호사 고성효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3. 15.

판 결 선 고 2024. 4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대 583㎡ 중 별지1 도면 표시 7, 6, 5, 4, 3, 8 내지 14,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ㄴ’ 부분 242㎡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강란주

별지